



2020년 정부 R&D 과제의 제도 개선 사항

(현장규제 개선사항)

일시: 2020년 7월 22일 (수)

11:00 ~ 11:30

장소: 의과대학 행정관 3층 대강당

Contents

01.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추진배경 및 경과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01.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추진배경 및 경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 5. 13.

① 추진배경

- ☑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을 위한 정부의 연구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연구현장의 체감
미흡 지적 지속
- ☑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운영

② 추진경과

- ☑ 35개 기관을 방문하여 21개 단기
규제개선 과제 선정
※ 중장기 규제개선 과제: '20년 하반기부터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 단기과제
 - (연구자) 자율이 존중되는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개선
 - (연구기관) 연구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목표

현장규제 해소를 통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 개선 현장체감 강화

21개 단기 규제개선 과제

1. (연구자) 자율이 존중되는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개선

- (1)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원칙 규정화
- (2) 연구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 (3)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성 강화
- (4)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 (5) 연구용 S/W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 (6) 연구개발비 지출방식(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제한 완화
- (7)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기별 집행 허용

1. (연구자) 자율이 존중되는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개선

- (8) 학사→석사, 석사→박사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허용
- (9)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폐지
- (10)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
- (11)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 (12)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 (13) 연구비 정산 시 서면증빙 부가제출 개선
- (14) 협약변경 사항 통일 및 절차 간소화
- (15)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합리화

2. (연구기관) 연구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16)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행
- (17)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 (18) 연구비관리 최우수기관 우대조치 확대 시행
- (19) 연구비관리시스템 참여율 관리 간소화
- (20) 연구장비 이용료 집행범위 확대
- (21) 연구장비 실태조사 통합 실시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1)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및 부족 시 선집행 가능



01 현행

- ☑ (신규과제) 연구과제 선정 이후 협약체결이 지연되거나, 협약체결 이후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원활한 연구수행 차질
- ☑ (계속과제) 연구개발의 특성상 계획수립 시점에 연도별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움에도 계획에 따라 연도별 연구비의 지급이 불가피하여 당초계획보다 연구진행이 빠르거나 대외환경이 변화될 경우 연구비 부족으로 추가연구를 진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발생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신규과제) 과제선정 통보시점부터 연구를 개시하고 연구비 지급 시까지 연구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선집행을 허용
 - 협약체결 시 협약개시일을 과제선정 통보시점으로 소급적용 인정
- ☑ (계속과제) 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선집행을 허용(단, 무분별한 활용방지를 위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승인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 반영(2020. 6.)

(2) 연구개발비 직접비와 간접비를 분리 지급



01 현행

☑ 연구비에서 직접비(연구자가 사용)와 간접비(연구기관이 사용) 비율을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호 갈등* 야기

* (연구자) 간접비 비율만큼 연구비가 삭감되는 것으로 인식

* (관리부서) 협상 과정에서 고시비율만큼 간접비 확보가 어려움을 호소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범적용하고 추후,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타 사업으로 점진적인 확대 예정

- 연구과제 공고 시 연구비에는 직접비 지원액을 명시하고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해당대학에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



기초연구사업 시범운영

(3) 연구개발비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 이체 모두 가능



01 현행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도 집행이 가능
- ☑ 그러나, 과거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연구장비·재료비 부당집행이 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일부부처에서는 연구비카드로만 연구장비·재료 구입을 허용
 - *다만,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 제출 시 계좌이체도 허용
- ☑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된 현재까지도 과거의 관행이 유지, 현장에서는 연구장비·재료 구입의 불편 호소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해당부처의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비카드뿐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한 연구비 집행을 허용
 - *단, 계좌이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최소한의 집행증명문서 구비 필요



매뉴얼 반영(2020. 6.), 부처 개정 권고

(4) 협약종료 전까지 구매완료시 연구 재료비 집행 가능



01 현행

- ☑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폐지('19. 9월)하였으나, 일부 부처의 경우 협약종료 2개월 전 구입 시에만 집행 인정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해당부처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재료비 집행기간 제한폐지의 현장적용을 촉진
- ☑ 또한 연구재료비와 연구시설·장비비를 분리하여 연구재료비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집행을 인정



매뉴얼 반영(2020. 6.), 부처 개정 권고

(5) 연구용 S/W 사용기간이 연구기간을 초과하여도 집행 인정



01 현행

- ☑ 연구용 S/W 라이선스*의 사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과제종료 후 집행으로 보아 초과기간 비율만큼의 사용료는 정산 시 불인정 회수
- *범용성S/W(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외 연구에 사용되는 설계 소프트웨어, 분석·해석소프트웨어 등으로 보통 1년 단위로 계약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용 S/W는 사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 하더라도 집행을 인정
- ※ 단, S/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에 한함
- ☑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제별 사용료를 모아 기관단위 연구용 S/W 라이선스 통합 구매·관리도 허용*
- *기관단위 연구용 S/W 통합 구매를 위해 기관장 명의로 과제별 사용내역 공문서 등을 발송하고, 그 비용을 기관이 흡수해야 함



매뉴얼 반영(2020. 6)

(6) 종이영수증 폐지 및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 전산화



01 현행

- ☑ 연구비 정산 시 일부 연구비 집행증빙 서류(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만 종이영수증 제출이 폐지되어 현장의 체감도 제한적

<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 >

구분	문서종류
결의서 ¹⁾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영수증서 ²⁾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증명문서 ²⁾	계좌이체내역서, 구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서, 견적서, 청구서 등

1) 결의서 : 기관 자체 전자정보처리시스템(ERP 등)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가능

2) 영수증서/기타문서 :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로 보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생산방법, 기관자체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여부 등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1단계) '표준매뉴얼' 개정을 통해 모든 영수증서*에 대해 연구비 정산 시 전자적 형태로 해당 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 * (개선)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서, 구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 단,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품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는 원본 보관 필요
 - 감사(감사원, 부처, 전문기관 등) 시에도 모든 영수증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 가능하도록 감사원에 협조 요청
 - ☑ (2단계)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정산 시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서 유형별로 제출·보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유형별 전자/전자화/종이 문서형태 구분, 전자화문서 보관·제출 절차 안내(법적 검토 병행) 등
 - 전자화문서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검토
- 매뉴얼 반영(2020. 6.), 문서 및 문서 보관 가이드라인, 감사원 협조요청

(7)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01 현행

- ☑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하여 10만 원 이하 회의비의 경우 영수증 첨부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 다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회의비의 경우에는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
- ☑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자체지침으로 '공동관리규정'보다 과도한 증빙을 요구
 - ※ 내부품의서, 회의록, 참석자 전원 날인, 영수증 등 다수의 문서 요구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을 '표준매뉴얼'에 구체적으로 제시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하나만 제출,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은 폐지, 10만 원 이하 회의비의 경우 영수증만 제출*
 - *지급 신청 시 회의개요(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등)는 명기
- ☑ 연구기관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시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



매뉴얼 반영(2020. 6)

(8) 협약변경 사항 통일 및 절차 간소화



01 현행

- ☑ 부처별·사업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협약변경에 대한 기준·절차는 '공동관리규정'보다 부처별 규정에서 자세하게 규정
- ☑ 하지만, 부처별로 규정 및 과제지원시스템 상 협약변경 시 승인/통보사항의 기준·절차가 상이
-또한, 협약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보사항*에 대해서도 공문이나 협약변경 신청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현장의 행정부담 가중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 사항 외 참여연구원 변경, 참여율 변경, 비목/세목간 예산변경 등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1단계) 부처별 규정 및 과제지원시스템 상 통보성 협약변경에 대해서는 지원시스템 입력으로 같음하고 공문 등 추가 서류 제출 절차 폐지
- ☑ (2단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범부처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작업과 연계하여 협약변경 시 승인/통보 사항에 대해 표준화된 기준·절차 마련



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관리시스템(PMS)

(9)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Ezbaro) 참여율 관리 간소화



01 현행

- ☑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Ezbaro)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과제 참여율*을 월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매월 참여율을 입력해야 하는 부담 발생
*연구원의 연봉총액에 따른 월급여 대비 해당과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의 비율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Ezbaro)의 월별 참여율 관리를 반기별 또는 연단위 관리*로 확대 개선
*반기별 또는 연단위 관리를 시행할 경우 구간별 평균 참여율로 관리·입력

(10)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01 현행

- ☑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관리규정'을 개정('19. 9월)하여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
- ☑ 그러나, 인건비 외 비용은 집행이 불가하여 연구지원인력이 관련 업무로 회의나 출장을 갈 경우 관련 비용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 발생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외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출장비, 회의비 등)도 직접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연구수당 제외
- ☑ 또한, 간접비를 통해서도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시 연구기관의 지원 노력*을 평가
 - *연구자 대비 연구지원 인력의 비중, 연구지원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

(11)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기별 집행 가능



01 현행

- ☑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별도계정에 모아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 중
- ☑ 다만, 학생인건비를 월별로 집행하다보니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큰 부담을 느끼는 등록금 지원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한계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은 매월 학생인건비를 지급 하되,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학기별 일괄 지급 허용
 - ※ 우선, 기관단위(학과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도입 후 확대 검토
 - *연구기관계정: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
 - *연구책임자계정: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 (서울대 해당)

(12) 동일대학 학사→석사→박사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01 현행

- ☑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

※ 공동관리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 이에 학사에서 석사 또는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하는 학생은 일정 기간(약 1개월 내외) 동안 재학생 신분이 아니어서 학생인건비 지급이 곤란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동일대학 학사에서 석사 또는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 지침(「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및 매뉴얼(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 개정 추진

(13) 계획서에 없어도 논문게재료 집행가능



01 현행

- ☑ 논문게재료는 '표준매뉴얼'에 따라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 직접비로 집행하거나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로 집행이 가능
- ☑ 현장에서는 표준매뉴얼을 경직적으로 해석, '당초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불인정
- ☑ 간접비 지원의 경우는 대학에 한정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직접비)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집행이더라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 인정
*해당 논문과 관련이 있는 연구과제를 명확히 사사표기하고 성과등록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매뉴얼' 등을 개정하여 부당집행기준에서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삭제
- ☑ (간접비) 대학, 출연연 등 전체 비영리기관으로 허용 확대



매뉴얼 반영(2020. 6.)

(14)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확대 (45일→2개월)



01 현행

- ☑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는 해당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
 - 최근 회계연도 일치로 인해 대부분의 과제들의 종료 시점이 유사하여 특정 시점에 최종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집중
 - 또한 45일 이내라는 일 단위 기준으로 제출마감일을 계산하기도 불편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평가용 최종보고서)로 확대
 - ※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2개월 이상 확대 및 시기(시작일) 도입 등을 추가 검토 예정

(15)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기준 명확화



01 현행

- ☑ '공동관리규정'을 개정('19. 9월)하여 연구활동비 내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를 직접비의 5% 이내에서 집행 시 정산을 면제*
*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게 사용실적 보고는 하되 증빙서류는 자체보관하고 제출하지 않음
- ☑ 하지만, 일부부처·전문기관의 경우 여전히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5% 이상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 등 연구현장에 혼선이 존재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부처·전문기관에 제도의 즉시 이행을 독려하고, 부처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신속한 개정 추진
- ☑ 부처·전문기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매뉴얼' 등을 개정하여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기준 명확화
-(정산면제) 연구활동비 내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직접비의 5% 이하로 계상한 경우 정산을 면제
-(상한 폐지) 연구활동비 내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직접비의 5% 초과 계상도 허용하되, 정산은 실시



매뉴얼 반영(2020. 6.), 부처 개정 권고

(16) 연구비 정산 시 서면증빙 최소화



01 현행

- ☑ 대부분의 정산 서류는 연구시스템에 등록되고 있어 온라인 정산이 가능함에도 일부 회계법인은 정산 시 별도로 인쇄된 자료를 요구
- ☑ 연구기관에서는 온-오프라인 정산에 대비해 이중으로 증빙 자료를 마련하는 등 연구행정 부담이 가중

0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02 개선(안)

- ☑ 회계법인 등에서 연구비 정산 시 과도한 서면증빙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매뉴얼'을 통해 안내
 - 부처협의를 통해 연구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온라인 정산을 실시하고, 온라인 증빙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에만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
 - 3공 바인딩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서류 제출 요구 금지
- ☑ 부처·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동 사안을 회계법인에 안내·권고



매뉴얼 반영(2020. 6.), 회계법인 권고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논의 배경



- ☑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안」
(‘20. 5. 13.,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
그 동안의 연구현장 의견을 반
영하기 위한 매뉴얼 개정 소요
발생

시행일/적용일:
2020. 7. 1.부터

(1)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 (종이영수증의 전자문서화 처리 확대)



01 현행

☑ 영수증서 중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종이로 출력하여 보관 불요, 단 영수증서가 카드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종이형태로 보관 필요)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02 개선(안)

☑ 연구비 집행 증명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관(종이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 객관적으로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수행기관 내부자료(품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는 원본을 보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 안내 예정(2020. 12.)
유형별 전자/전자화/종이 문서형태 구분, 전자화문서 보관·제출절차(법적검토 병행)



영수증서의 전자적 형태 제출을 통한 행정부담 경감(과학기술 현장 규제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 5. 13.)

시행일/적용일:
2020. 7. 1.부터

(2) 연구개발비 지출방식(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제한 완화



01 현행

-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현금으로도 집행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02 개선(안)

-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지출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강제하여서는 안됨(다만,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등 최소한의 집행증명문서 구비 필요)



연구개발비 사용방식 제한 완화(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 5. 13.)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3)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시행일/적용일:
2020. 7. 1.부터



01 현행

신설

02 개선(안)

연구비 입금 지연 시 연구기관 자체재원으로 연구비 선집행 가능

비영리기관의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관 자체재원(해당연도 해당과제 간 접비 규모 內)을 활용한 연구비 선집행 가능하나 연구시설·장비비 및 재료비에 한함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선집행 근거 마련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 5. 13.)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02 개선(안)

- ☑ 5% 초과 계상 시 정산 실시(5% 초과 집행 또는 5% 이하 집행을 불문)
5% 이하로 계상하고, 5% 이하로 집행한 경우만 정산 면제)



정산면제 기준 명확화(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20. 5. 13.)

(4)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01 현행

- ☑ 직접비의 5%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5% 초과 계상 가능하나 5% 초과 집행 시 정산실시



시행일/적용일:
2020. 7. 1.부터

(5) 연구비 정산시 서면증빙 부가제출 개선

시행일/적용일:
2020. 7. 1.부터



01 현행

신설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02 개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정산 시 과도한 서면증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연구비 시스템에서 온라인 정산을 실시하되, 증빙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에만 서면자료를 요구하여야 함



과도한 서면증빙 요구 개선(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 5. 13.)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02 개선(안)

☑ 단,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인 경우만 인정



강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허용 여부 명확화(한국연구재단 요청사항)

(6) 대학강사 인건비 지급



01 현행

☑ 단,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시행일/적용일:
2020. 7. 1.부터

시행일/적용일:
2020. 7. 1.부터

(7) 연구용 S/W 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01 현행

- ☑ 연구용 S/W라이선스의 사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과제종료 후 집행으로 보아 초과기간 비율만큼의 사용료는 정산 시 불인정 회수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02 개선(안)

- ☑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용 S/W라이선스는 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경비 집행 인정(다만, S/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에 한함)



연구용 S/W라이선스 비용 집행 합리화(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 5. 13.)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02 개선(안)

- ☑ [부당집행기준] 10만원 초과 회의비의 경우,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제출 시 부당집행으로 보지 않으나, 지급 신청 시 회의개요(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전원명단)는 명시 필요



회의비 집행 시 증명서류 명확화(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 5. 13.)

(8)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시행일/적용일:
2020. 7. 1.부터



01 현행

- ☑ [부당집행기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첨부 시 제외)

시행일/적용일:
2020. 7. 1.부터

(9)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 명확화



01 현행

신설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02 개선(안)

연구재료비와 연구시설·장비비의 분리로 연구재료비의
경우 유연한 집행을 허용하고자 협약 종료전까지 구매
완료한 재료비는 인정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 5. 13.)

(10)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시행일/적용일:
2020. 7. 1.부터



01 현행

☑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X(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 $\frac{20}{100}$)]

* 통합 Ezbaro 적용사업: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 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02 개선(안)

☑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X(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 $\frac{20}{100}$)]

* 통합 Ezbaro 적용사업: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 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



한국연구재단 요청사항



감	사	함	니	다	.
---	---	---	---	---	---